

가평군 공고 제2021-250호

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접수 수정 공고

가평군에서 추진하는 「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사업」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2. 16.

가 평 군 수

1. 사업 개요

가. 사업명 :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

나. 사업량 : 1,278,000천원(약 810대)

※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는 변동 될 수 있으며, 그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

다. 접수기간 : 2021. 2. 16.(화) ~ 예산 소진 시 까지

라. 청구기간

-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: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
- 신차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 :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4개월 이내에 제출(단,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 하여야 함)

마. 지원대상 :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, 사용본거지가 가평군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* 및 '05.12.31.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(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트럭)

*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대상 확인 방법(<https://emissiongrade.mecar.or.kr/>)

바. 보조금 지원금액

-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아래표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(단,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생하는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가능) 다만, 총중량이 3.5톤 미만인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(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확인 받은 경우) 이거나 영업용 차량,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(차상위계층)가 소유한 차량은 보조금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(단, 기본최대 420만원, 추가최대 180만원 한도 내)

※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하며, 단, 영업용 차량,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은 전산(원부,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등)에서 자동 확인

※ 서류 발급처(기본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하며, 청구 후 제출서류는 미 인정)

- 소상공인 확인서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<http://sminfo.mss.go.kr/>)에서 발급 가능(문의전화 : 국번없이 1357)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: 민원 24(<https://www.gov.kr/>) 또는 복지로(<http://www.bokjiro.go.kr/>)에서 발급가능

※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 중 전산으로 조회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 장치 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. (기본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하며, 청구 후 제출서류는 미 인정) 예) 4륜구동 차량 등

<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>

구 분	상한액(만원) (기본+추가 지원)	지원율	
		기본	신차구매시 추가 지원
총중량 3.5톤 미만	300	최대 210만원(70%)	최대 90만원(30%)
총중량 3.5톤 이상	3,500cc 이하	100%	200%
	3,500cc 초과 5,500cc 이하		
	5,500cc 초과 7,500cc 이하		
	7,500cc 초과		
도로용 3종 건설기계	4,000		

※ 저소득층 증빙서류(수급자증명서)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율 10%를 추가지원(상한액 초과 불가)

※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확인 받은 경우,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지원(상한액 초과 불가)

※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에 따른 보조금의 합이 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

※ 보조금 인상관련 서류(소상공인, 저소득층, 차상위계층, 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확인서 등)는 기본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하며, 청구 후 제출서류는 미 인정

2. 조기폐차 보조금 기본 지원

가. 선정방법(선착순) : 아래 5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사용본거지가 가평균으로 등록되어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'05.12.31.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

※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차량 등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

-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가평균에 등록된 자동차
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

※ 도로용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

-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

판정이 있는 자동차

※ 지정된 폐차장에서 대상차량확인(성능검사)을 받아야 하며,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

- **정부지원**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**없어야 함**
 - 최종 소유기간이 조기폐차 보조금 **신청일전 6개월 이상**이어야 함
- 나. 사업내용 :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차량 확인을 받고 말소(차령초과, 수출말소 제외)후 **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**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

다. 접수방법 :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인터넷 접수 또는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

- (인터넷 접수) 컴퓨터로 “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” 검색 후 저공해조치 신청
※ 인터넷 접수 방법은 [별첨2]참고하여 신청, 사업 시행일자 이후부터 접수 인정하며, 공고 시행 이전 **기 접수자는 재 접수하여야 함**
- (등기우편 접수)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, 11층(삼산동, 엘림타워)
(우편번호 21344)
- (이메일 접수) 1577-7121@aea.or.kr

라. 구비서류(사본 가능)

- 조기폐차 접수 구비서류
 -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[첨부1] 1부
 - 신분증 사본 (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) 1부
 - 자동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(건설기계의 경우 : 건설기계 등록증 1부)
 - 자동차 / 건설기계 검사결과 증빙서류 각 1부 (**정보공동이용 동의 서명 시 생략 가능**)
- 조기폐차 후 보조금 청구서류(**원본 제출**)
 -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[첨부2] 1부
 - 신분증 사본 (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) 1부
 - 차량 / 건설기계 말소등록증 1부 (원본 또는 사본)
 - 소유자의 통장사본 1부
 -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

3.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 (예산 소진 시까지)

가. 선정방법 : 조기폐차 청구서 제출 이후 아래의 조건에 맞는 차량을 신규로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(조기폐차한 차량의 소유자는 동일해야함)가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먼저 제출한 순서로 지원

나. 지원대상

① 총중량 3.5톤 미만 :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`21.1.10이후(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전 2개월 이내인 경우 `20년도 인정) 배출가스등급 1~2등급 차량을 신규(중고차 포함)로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30%를 추가 지원.(이륜자동차 제외) 다만,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② 총중량 3.5톤 이상 :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을 신규로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%를 추가 지원(중고차 제외)

- 신규로 등록하는 자동차가 대기규칙 별표17제2호 아목 규정('21.1.1일 이후 신규 등록 차량. 다만,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전 2개월 이내인 경우 `20년도 인정)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.5톤을 초과하는 대형·초대형 화물차
- 조기폐차를 한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. 다만,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% 이내 범위의 규격 증감은 동일 규격으로 인정

다. 청구기간 :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(원본)를 4개월 이내(단,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 하여야 함)에 제출 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

※ 당해 연도 집행을 위해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

※ 신규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등록된 차량(발급 전 2개월 이내 등록된 차량 포함)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함

라. 접수방법 :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만 가능(원본 제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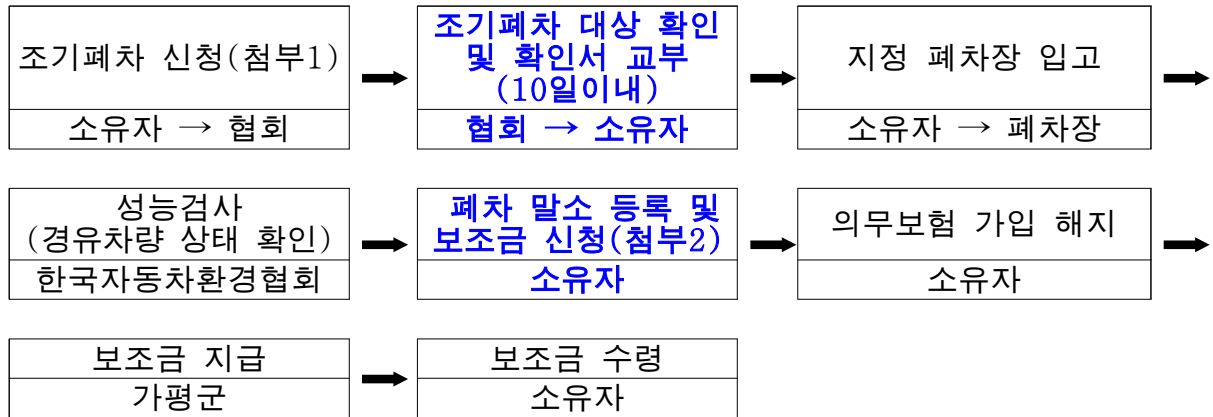
- 우편주소 :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, 11층(삼산동, 엘립타워) (우 21344)

마. 구비서류

-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[첨부3] 1부
- 신분증사본(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) 1부
- 신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(※구매계약서는 인정 불가)
- 소유자의 통장 사본 1부
-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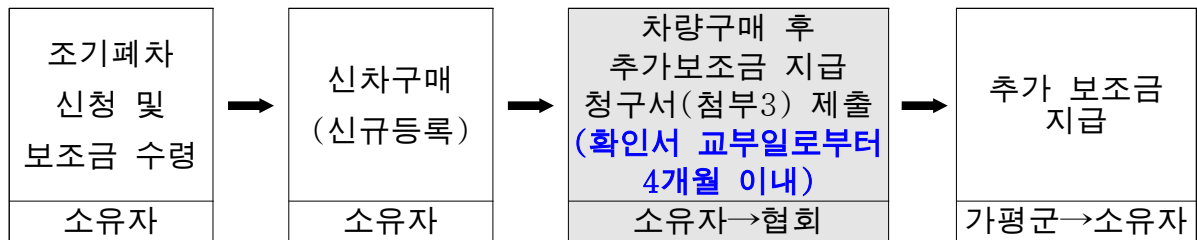
4. 조기폐차 절차

가. 기본절차(조기폐차)



* 신차 구매(등록)은 대상차량확인(성능검사) 및 말소등록 절차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보조금 지급 불가

나. 추가지원



5. 기타사항

- 가.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「'21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」 등 관련 규정에 따름
- 나. 조기폐차 **보조금액 관련 문의 증가**로 상담전화 **연결이 지연**되고 있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. **보조금액은** 차량정보(연식, 형식 등)을 면밀히 검토한 후 **정확하게 산정**되고 있으니, **상담전화 문의를 자제**하여 주시기 바람
- 다.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
- 라. 협회에서 발행하는 **대상차량확인(정상가동 여부)**을 **받지 아니하고** 보조금을 청구 하는 경우 보조금 **지급 불가**
- 마. 보조금(추가청구포함) **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** 후 추가보조금 지급 요청 등 청구내용을 **반복 할 수 없음(단,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)**
- 바. **조기폐차 보조금 교부**는 신청서 접수, 대상확인(대상차량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 확인), 보조금산정, 대상차량확인(정상운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검사), 청구서 내용(계좌번호 등) 입력 및 서류이송 등이 필요하므로

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~3개월 소요(신차 구매 보조금 교부는 차량 구매 보조금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)

※ 폐차장 입고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입고 필요

※ 청구서와 같이 제출하는 통장(계좌)은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해야 하며, 입출금이 불가능 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

사. 조기폐차 신청차량의 진행 상태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가능(<https://emissiongrade.mecar.or.kr/>)

아. 신청서(청구서) 제출 시 보조금액 등 폐차관련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, 반드시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람

자.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 검사비용 발생할 수 있음

차. 조기폐차 신청 시 보조금 상한액 보장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허위/과장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

카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9조의3에 의거 **조기 폐차 추가 지원금을 지급 받은 신규 자동차의 소유자는 최소 2년의 의무 사용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**

타.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폐차 말소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됨

파. (재)검사기간 경과한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(상품용·전시용 차량의 경우 관능검사 합격 차량에 한해 지원 가능)

하. 압류된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 이전까지 압류해제 시 보조금 지급 가능

※ 조기폐차 접수 및 안내 문의

- 접수 및 안내 : 한국자동차환경협회 (☎1577-7121)
- 가평군 조기폐차 지정폐차장 - 제일종합산업(청평면 상지로 16) (☎02-462-7010)
※ 조기폐차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아래 수도권 지정폐차장에서 모두 가능

※ 수도권 조기폐차 지정폐차장(<https://www.aea.or.kr/new/information/contacts.php>)

- 한국자동차환경협회(<https://www.aea.or.kr>) → 고객센터 → 고객상담안내 → 조기폐차

※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 발급 문의(제작사)

업체	이엔드디	에코닉스	크린어스	HK-MnS	세라퀵	화이버텍	일진복합소재
연락처	1644-2402	1666-3243	031-627-2915	070-4267-2730	02-744-1777	031-942-9008	031-220-0872

[별첨1]

위 임 장

수 임 자 (위임을 받는 자, 신청자)	주 소		
	성 명	(인)	
	생 년 월 일		
위 임 자 (위임을 주는 자)	주 소		
	성 명	(인감도장)	
	생 년 월 일		
대상(폐차) 차량 정보	차명	차종(정원)	
	등록번호	연료	제작연도

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「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」의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.

붙임 : 인감증명서 1부.

년 월 일

위 임 자 : (인감도장)